

1. 개정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규칙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각종 서식, 경영공시 대상 등을 정하도록 위임한 하위 법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안 제2조의2, 안 제5조제3항, 안 제5조의2제1항, 안 제5조의3)

각종 신청서식, 통합공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와 관련된 사무의 제출·처리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해산·청산종결·원외이용 실적 신고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서식의 제출·처리 기관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 ~ 9.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공정거래위원회·시·도지사”를 “중소벤처기업부·시·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 ----- ----- ----- <u>중소벤처기업부령</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영 제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2조의2(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 ----- ----- ----- ----- ----- <u>중소벤처기업부령</u> ----- ----- -----.
제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①·② (생략)	제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 <u>중소벤처기업부령</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① 영 제1	제5조의2(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① -----

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②·③ (생략)

제5조의3(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영 제10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3. (생략)

제8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①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영 제6조제1항”은 “영 제15조제1항”으로,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3항”은 “영 제15조제2항”으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영 제6조제1항”은 “영 제17조제1항”으로,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3항”은 “영

---중소벤처기업부령-----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3(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
--중소벤처기업부령-----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①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

②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제17조제2항”으로 본다.

제10조(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
한 연합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① 연합회의 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법 제53조제2항”
은 “법 제69조”로, “조합”은 “연
합회”로, “시·도지사”는 “공정
거래위원회”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3조제2항”은 “법
제80조”로, “조합”은 “전국연합
회”로, “시·도지사”는 “공정거
래위원회”로 본다.

제12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

제10조(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① -----

----. -----

-----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으로--.

② -----
-----.

-----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으로-----
-----.

제12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① 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도지사”는 “<u>공정거래위원회</u>”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도지사”는 “<u>공정거래위원회</u>”로 본다.	청산종결 신고) ① ----- ----- -----. -----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 ② ----- -----. ----- -----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으로----- -----.
--	--